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10.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이유

- 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 나. 소방관서 신설(소방안전학교, 백령119안전센터)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며,
-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기한을 연장하고,
- 라.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원총수 : 6,24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416명
  -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22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 다.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 3. 정원 증원 등 조정내역

- 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 22명
  - 소방안전학교 : 19명
  - 백령119안전센터 : 3명

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 연장 : 45명

○ 당초 : 2010. 8. 31. → 연장 : 2013. 8. 31.

다.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 변경

○ 비서실장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 지방별정4급

○ 비서요원

- 지방별정6급 → 지방행정6급

- 지방기능운전8급 → 지방별정8급

라. 기능직 5명을 일반직 5명(5급 이하)으로 변경

#### 4. 참고사항

가. 비용소요 추계서(7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9쪽)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21명”을 “6,2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00명”을 “2,222명”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사무처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6,243	6,147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511	2,447				64
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9	19	10	2	4	3
3급·4급		1	1	1			
4급		108	106	57	6	16	27
5급 이하		2,380	2,319				61
별정직 소계		47	41				6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10	4	2	2		6
5급 상당 이하		36	36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소계		2,222	2,222				
소방정		12	12	4	8		
소방령 이하		2,210	2,210				
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				
총장		1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나 전임강사		414	414		414		
조교		94	94		94		
기능직 소계		794	768				26

[별표 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67		
	일반직	3급	1		
		4급	4		
		5급이하	61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5급이하	4	2011.3.31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일반직	3급	1	<i>2013.8.31</i>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4급	4		
		5급이하	39		
기능직		1	<i>2013.8.31</i>		
사 업 소	일반직	5급이하	18	2010.12.31	- 도시철도2호선 건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6,221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200명</u></p> <p>3.~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243명</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2,222명</u></p> <p>3.~4. (현행과 같음)</p>

#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정원의 변동 내역 : 순증 22명
3. 비용소요 내역

구분 (과목)	산출기초	소요비용
<b>총계</b>		<b>1,147,282,610</b>
인건비	○ 인건비 22	609,043,500
	○ 봉급	562,194,000
	○ 소방령(23호봉) 2,864,700 원 x 2명 x 12월 =	68,752,800
	○ 소방경(21호봉) 2,482,300 원 x 6명 x 12월 =	178,725,600
	○ 소방위(18호봉) 2,168,200 원 x 6명 x 12월 =	156,110,400
	○ 소방장(17호봉) 1,943,700 원 x 3명 x 12월 =	69,973,200
	○ 소방교(10호봉) 1,477,200 원 x 5명 x 12월 =	88,632,000
	○ 상여금	46,849,500
	- 정근수당 562,194,000 원 x 1.0/12 =	46,849,500
수당	02 수당	172,681,810
	○ 가족수당	17,107,200
	○ 배우자 40,000 원 x 22명 x 0.94 x 12월 =	9,926,400
	○ 존·비속 20,000 원 x 22명 x 1.36 x 12월 =	7,180,800
	○ 자녀학비수당	11,086,760
	○ 중학교 51,990 원 x 22명 x 4회 x 0.17 =	777,770
	○ 고등학교 433,880 원 x 22명 x 4회 x 0.27 =	10,308,990
	○ 정근수당가산금	39,480,000
	○ 25년 이상 130,000 원 x 8명 x 12월 =	12,48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원 x 5명 x 12월 =	6,600,000
	○ 15년~20년미만 80,000 원 x 3명 x 12월 =	2,880,000
	○ 10년~15년미만 60,000 원 x 6명 x 12월 =	4,320,000
	○ 위험수당 50,000 원 x 22명 x 12월 =	13,200,000
	○ 연구업무수당	9,600,000
	○ 소방령 60,000 원 x 2명 x 12월 =	1,440,000
	○ 소방경이하 40,000 원 x 17명 x 12월 =	8,160,000
	○ 대우공무원수당	7,613,060
	○ 소방장 1,943,700 원 x 3명 x 12월 x 0.048 =	3,358,720
	○ 소방교 1,477,200 원 x 5명 x 12월 x 0.048 =	4,254,340
	○ 초과근무수당	87,794,790
	- 소방직 8,988 원 x 22명 x 12월 x 37시간 =	87,794,790

구분 (과목)	산 출 기 초					소요비용
<b>복리후생경비</b>						<b>218,198,400</b>
	<b>03 정액급식비</b>					<b>34,320,000</b>
	○ 정액급식비	130,000 원	x	22 명	x	12 월 = 34,320,000
	<b>04 교통보조비</b>					<b>33,960,000</b>
	○ 소방령	140,000 원	x	2 명	x	12 월 = 3,360,000
	○ 소방경, 위, 장	130,000 원	x	15 명	x	12 월 = 23,400,000
	○ 소방교	120,000 원	x	5 명	x	12 월 = 7,200,000
	<b>05 명절휴가비</b>					<b>56,219,400</b>
	○ 명절휴가비	562,194,000 원	x	1.2/12	=	56,219,400
	<b>06 가계지원비</b>					<b>93,699,000</b>
	○ 가계지원비	562,194,000 원	x	1/6	=	93,699,000
<b>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b>						<b>7,200,000</b>
<b>직무수행경비</b>						<b>101,340,000</b>
	<b>01 직책급 업무추진비</b>					<b>3,600,000</b>
	○ 과 장	100,000 원	x	3 명	x	12 월 = 3,600,000
	<b>02 직급보조비</b>					<b>39,660,000</b>
	○ 소방령	250,000 원	x	2 명	x	12 월 = 6,000,000
	○ 소방경, 위	155,000 원	x	12 명	x	12 월 = 22,320,000
	○ 소방장	140,000 원	x	3 명	x	12 월 = 5,040,000
	○ 소방교	105,000 원	x	5 명	x	12 월 = 6,300,000
	<b>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b>					<b>58,080,000</b>
	○ 대민활동비	50,000 원	x	22 명	x	12 월 = 13,200,000
	○ 방호활동비	170,000 원	x	22 명	x	12 월 = 44,880,000
성 과 상여금	○ 성과상여금 22 명					<b>38,818,900</b>
	○ 소방령(2명)	2,264,000 원	x	2 명	=	4,528,000
	○ 소방경(6명)	2,007,200 원	x	6 명	=	12,043,200
	○ 소방위(6명)	1,804,800 원	x	6 명	=	10,828,800
	○ 소방장(3명)	1,576,300 원	x	3 명	=	4,728,900
	○ 소방교(5명)	1,338,000 원	x	5 명	=	6,690,000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li> <li>○ 제25조(별정직 정원)</li> <li>○ 제28조(한시정원)</li> <li>○ 제30조(정원의 규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제28조 (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